준법감시인 심의필: 2025-2798(2025.06.01.~2027.05.31.) [



퇴직연금 정기예금 요약상품설명서

기본정보

| 가입다 | 상 | 근로자퇴직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가입금 | 남액 | 1원 이상 | | | | | | |
| 계약기 | l간 | 3개월, 6개월, 1년, 18개월, 2년, 30개월, 3년, 5년(디폴트옵션형은 3년) | | | | | | |
| 이자지 | l급시기 | 만기일시 지급식 :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 | | | | | | |
| 지급저 | 한 |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| | | | | | |
| 해지 시 불이익 | |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금리 적용 등 | | | | | | |
| 적용금리 | | 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 적용 | | | | | | |
| | | (DB)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| | | | | | |
| 마기초 | l리방법 | (DC/IRP)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| | | | | | |
| | 1-10 = | 1 | ☞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, 예금주의 별도 | | | | | |
| ⊢ + | I T I |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재예치 됨 | | | | | | |
| 분할해지 | | |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 통장발급,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수도,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| | | | | |
| 제한시 |) | | | | 미과제공업서국 가입 물가 ·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 | | | |
| 예금자 | DC/IRP | | | | ·보오 내성 음융성품으로 운용되는 식립음에 내 ·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| | | |
| 보호 | DO /1111 | | 고고 3日되는 글 합산) 보호됩니다. | | 3년년년까지(단당되는 급당당급 단대되자) | | | |
| TA. | DB |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| | | | | | |
| | 1 | ■ 금융회 | 사가 「금융소비자 . | 보호에 관현 | 한 법률」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| | | |
| 의버게(| 약해지권 |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| | | | | | |
| тыл. | 국에시끄 |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 | | | | | | |
| | | 일로부 | 터 5년 이내의 범위 | l에서 가능(|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| | | |
| | | | 경과기간 | | 적용금리/적용률 | | | |
| | | DB | 3개월미만 | ス ロキ | 0.10% | | | |
| | | | 6개월미만 9개월미만 | | 지 기준금리 × 5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지 기준금리 × 6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| | | |
| | | DC | 11개월미만 | | IN 기준급니 × 60% × 경파월구 ÷ 계약월구 IN 기준금리 × 7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| | | |
| | | | 11개월이상 | | 시 기준급다 × 70% × 영과월수 ÷ 계약월수 지 기준금리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IRP | | | | | | |
| | | ※ 중합한다켓영영>급룡영품글>중합근영>중시글>에급>에급급다>기시극>영기에급 ■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, 월 미만 일수는 버림 | | | | | | |
| | | | 경과기간 | | 적용금리 | | | |
| 중도 | E해지 | 디폴트 | 32개월 미만 | | | | | |
| 이자율 | | 옵션형 | 그그네의 이사 | 약정금리 x 90% | | | | |
| | | | 32개월 이상 | | 약정금리 x 90% | | | |
| OJ. | 자율 | | | 일 또는 재예치' | 약정금리 x 90% 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적용 | | | |
| | | ('25년 6월 가입 부터 적용) | 약정금리 : 예금가입일경과월수, 계약월수 | 미적용 | 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적용 | | | |
| | 자율 , 세전) | ('25년 6월 가입 | ■ 약정금리 : 예금가입일 | 미적용 | 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적용 | | | |
| | | ('25년 6월 가입 | 약정금리 : 예금가입일경과월수, 계약월수시행일('25년6월) 0 | 미적용 | 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적용 | | | |
| | | ('25년 6월 가입 부터 적용) 2. 특별중도 | ■ 약정금리 : 예금가입일 ■ 경과월수, 계약월수 ■ 시행일('25년6월) 0 해지 금리 | 미적용 후 신규계좌 | 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적용부터 적용 | | | |
| | | ('25년 6월 가입 부터 적용) 2. 특별중도 | ■ 약정금리 : 예금가입일 ■ 경과월수, 계약월수 ■ 시행일('25년6월) 0 해지 금리 | 미적용 후 신규계좌 | 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적용 | | | |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상품개발부서: 퇴직연금부)

3개월 만기 금리

6개월 만기 금리

경과기간별 금리

1년 만기 금리

3개월 미만

3개월 ~ 6개월 미만

6개월 ~ 1년 미만

1년 이상

^{주)}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

준법감시인 심의필 : 2025-2798(2025.06.01.~2027.05.31.)



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이 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약관,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 됩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퇴직연금 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

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□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증서에 따릅니다. (작성기준일 : 2024.05.01.)

| 구 분 | 내용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가 입 대 상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| | | | | | | | |
| 가 입 금 액 | 1원 이상 최고금액 제한없음 | | | | | | | | |
| 계 약 기 간 | 3개월, 6개월, 1년, 18개월, 2년, 30개월, 3년, 5년 (디폴트옵션형은 3년) | | | | | | | | |
| 이자지급시기 | 만기일시 지급식 :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 | | | | | | | | |
|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| 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변동 불가 | | | | | | | | |
| 해지 시 불이익 |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| | | | | | | | |
| 만기앞당김해지 | 만기일이 금융휴무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인 경우 만기앞당김 해지 가능 ※ 단,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금리를 적용 | | | | | | | | |
| | 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 적용 (2025.05.01.현재 고시금리, 연%,세전) | | | | | | | | |
| 적용 | 유 형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18개월 | 2년 | 30개월 | 3년 | 5년 |
| 이자율 | 확정급여형 | 2.10 | 2.20 | 2.50 | 2.05 | 1.93 | 1.83 | 1.80 | 1.80 |
| (연%, 세전) | 확정기여형,개인형 | 2.00 | 2.10 | 2.40 | 1.95 | 1.83 | 1.73 | 1.70 | 1.70 |
| | (디폴트옵션) 확정기여형,개인형 | _ | - | - | - | _ | - | 1.80 | - |
| | ■ 상기 이율은 작성 | 성일 현재 | 금리로 | 실제 적 | 용금리는 | 가입일의 | 의 고시금 | 리에 따 | 름 |

| 2 거래 조건 | 1 | | with psyl/panking.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|
| | | 경과기간 | 적용금리/적용률 | | |
| | DD | 3개월미만 | 0.10% | | |
| | DB | 6개월미만 |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5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| | |
| | • | 9개월미만 |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6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| | |
| | DC | 11개월미만 |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70% × 경과월수 : 계약월수 | | |
| | • | 11개월이상 |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| | |
| 중도해지 이자율 (연%,세전) | IRP | ※ 농협인터넷병 | 준금리 :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 뱅킹>금융상품몰>농협은행>공시실>예금>예금금리>거치식>정기예금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, 월 미만 일수는 버림 | | |
| | | 74 71 71 7L | 저오그리 | | |
| | 디폴트 | 경과기간 | 적용금리 | | |
| | 옵션형 | 32개월 미만 | 약정금리 x 80% | | |
| | | 32개월 이상 | 약정금리 x 90% | | |
| | ('25년 6월 가입 부터 적용) | 약정금리 :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적용 경과월수, 계약월수 미적용 시행일('25년6월)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| | | |
| | , | 규일)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아래 이율 적용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,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 취소 등 사유인 경우에는 | | | |

래 이율 적용 취소 등 사유인 경우에는 [연급 구구도 시급, 사진시장운용방법의 면경 및 공인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금리 적용

특별중도해지 이자율 (연%,세전)

특별중도해지

사유

| 경과기간 | 적용금리 ^{주)}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개월미만 | 3개월 만기 금리 |
| 3개월 ~ 6개월미만 | 6개월 만기 금리 |
| 6개월 ~ 1년미만 | 1년 만기 금리 |
| 1년 이상 | 경과기간별 금리 |

- 주) 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
- 1.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(급여이전 포함)
- 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2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- 3.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
 - 1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
 - 2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
 - 3)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4) 수탁자의 사임
- 4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
- 5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
- 6. 가입자 사망
- 7. 연금지급
- 8.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,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(단, 개인형IRP에 한함)
- 9.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 IRP에 한함)
- 10.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
- 11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(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) 및 13조의6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)의 사유로 인한 상품교체인 경우

2

| 만기처리방법 | 1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■ 재예치 제외 :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■ 재예치 금리 : 재예치일 현재 고시된 금리 적용 ■ 재예치 금액 :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 2.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,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■ 만기상환 제외 :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이예금이 편입된 경우,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재예치 됨 |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분할해지 |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 가능 (단,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 가능) 인출횟수 산정 제외 사유 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경우 ■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을 위한 경우 ■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| | | | |
| 계약해지방법 | 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 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 | | | | |
| 제한사항 | 통장발급,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수도 불가 | | | | |
| 세제혜택 |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| | | | |
| 예금자보호 여부 | DC/IRP | 해당 예금보업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명 최고 5천만원 |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합산) 보호됩니다. | | |
| | DB | 비해당 _{예금보영공} 바보호 |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| | |

2 거래 조건

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^{주)} 시 **일정 기간 이내**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 - 주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(제17조~21조):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, 불공정영업행위, 부당권유행위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. (상품개발부서 : 퇴직연금부)



〈별지1〉 예금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

| 구 분 | 내 용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자료열람 요구권 |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수 있습니다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 | | | |
| 위법계약 해지권 |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| | | | |
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|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 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 | | | |
| 예금자보호 | (DC/IRP)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 | | | | |
| 여부 | (DB) 예금보험공사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| | | | |